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19. 11. 26(화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
(복지교육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55호
- 나. 제 출 자 : 운영회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

2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2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 임기, 해촉,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8조)
- 라. 위원회 간사, 수당 등에 관한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(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
 - (2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2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19. . . ~ . 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2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 임기, 해촉,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간사와 수당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하였음.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의 제정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며
-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취지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장애인 복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나아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19. 7. 16.] [법률 제16248호, 2019. 1. 15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19. 7. 2.] [대통령령 제29950호, 2019. 7. 2., 타법개정]

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“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